

# 상조사업운영규정

제정 < 2020.01.03.>

## 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(이하 ‘세종교총’ 이라 한다) 정관 제4조 제2항에 준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호부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부조사업)

상조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회원이 일반퇴직 했을 때(일반퇴직이란, 타시도로 전출하거나 의원면직일 경우에 한함)
2. 회원이 명예퇴직 했을 때
3. 회원이 정년퇴직 했을 때
4. 회원이 사망했을 때
5. 회원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
6. 회원 본인이 결혼할 때
7. 회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

## 제3조(부조금 지급대상)

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과 유족은 부조금을 지급받는다.

- ① 세종교총 회원가입 1년 이상자의 본인 및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
- ② 세종교총 회원가입 1년 이상인 회원 본인이 결혼할 때
- ③ 세종교총 회원가입 1년 이상의 회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
- ④ 부조금의 신청 및 지급기한은 사안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- ⑤ 개인의사로 회원 자격을 탈퇴한 자에 대한 부조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.  
※(충남교총에서 세종교총으로 전입한 회원은 충남교총 상조가입연수를 가산한다.)
- ⑥ 사립학교 회원의 정년은 법 또는 학교재단의 정관 및 규정에 대해 퇴직할 경우만 적용 한다.  
(단,사고퇴직 및 본회 경조 규정에 대하여 정년퇴직 부조금을 지급받은 회원은 제외한다.)

## 제4조(부조금의 구분)

부조금은 퇴직시의 위로금과 사망시의 조의금, 결혼·출산시의 축하금으로 구분한다.

## 제5조(년수계산)

- ① 년수는 첫 상조회비 납부일을 기준으로 만으로 계상한다.
- ② 월수계상에 15일 이상은 1월로하며 6월 이상은 1년으로 계상한다.
- ③ 회원가입 후 3개월 이상 회비납부를 중단하고 재가입할 경우 이전 가입연수는 회원 가입연수로 계상하지 않는다.  
(단, 병역·육아휴직 후 재가입 시 휴직기간을 제외한 회원 가입연수로 계상한다.)
- ④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비가 연체된 회원은 2개월 내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자격이 유지된다.

**제6조(부조금 각출)**

제3조에 대한 부조금은 세종교총회비에 매월 1,000원씩 포함되어 각출한다.  
(단,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부조금 각출액을 증감할 수 있다.)

**제7조(부조금 지급절차)**

- ① 제2조에 대한 부조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분회장은 세종교총회장에게 보고한다.
- ② 세종교총회장은 제3조에 의한 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제출서류)**

상조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한다.

- ① 부조사안보고서(명예, 정년, 사망, 배우자사망, 결혼, 출산) 1부
- ② 일반퇴직회원 확인서(일반퇴직자에 한함) 1부
- ③ 사망: 기본증명서(사망자) 또는 사망확인서(진단서) 1부
- ④ 결혼: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(사본) 1부
- ⑤ 출산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- ⑥ 본인 은행통장 사본 1부

**제9조(부조금 지급액)**

부조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일반퇴직

부조금 불입년수	부조금 지급액	비 고
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	
10년 이상 15년 미만	100,000	
15년 이상 20년 미만	150,000	
20년 이상 30년 미만	200,000	

- 2. 명예퇴직(20년이상이고 의원 면직자 포함) : 300,000원
- 3. 정년퇴직(20년이상) : 300,000원
- 4. 회원 사망 : 300,000원
- 5. 배우자 사망 : 200,000원
- 6. 회원본인 결혼 : 100,000원
- 7. 출산(회원 또는 배우자): 50,000원

**제10조(부조금 수령자)**

회원의 퇴직 시에는 본인에게 사망 시에는 회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순으로 지급한다.

**제11조(규정의 개폐)**
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① 본 규정시행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대하여 시행한다.